

[양식 제10호]

혼 인 신 고 서 (년 월 일)		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,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구 분		남 편(부)			아 내(처)			
① 혼인당사자 (신고인)	성명	한글	*(성) / (명)		① 또는 서명	*(성) / (명)		① 또는 서명
		한자	(성) / (명)			(성) / (명)		
	본(한자)		전화		본(한자)		전화	
	출생연월일							
	*주민등록번호		-		-			
*등록기준지								
*주소								
② 부 모 (양부모)	부 성명							
	주민등록번호		-		-			
	등록기준지							
	모 성명							
	주민등록번호		-		-			
등록기준지								
③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				년 월 일				
*④성·본의 협의		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?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
⑤근친혼 여부		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? 예 <input type="checkbox"/> 아니요 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
⑥기타사항								
⑦ 증 인	성 명	① 또는 서명		주민등록번호	-			
	주 소							
	성 명	① 또는 서명		주민등록번호	-			
	주 소							
⑧ 동 의 자	남 편	부 성명	① 또는 서명		후 견 인	성명	① 또는 서명	
		모 성명	① 또는 서명			주민등록번호		
	아 내	부 성명	① 또는 서명			성명	① 또는 서명	
		모 성명	① 또는 서명			주민등록번호		
⑨제출인	성명			주민등록번호	-			

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**형법에 의하여 처벌**받을 수 있으며, *표시 자료는 인구동향조사 목적으로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아래 사항은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위한 것으로, 「통계법」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구동향조사		년 월 일부터 동거	
⑩실제결혼생활시작일			
⑪국적	남편	①대한민국출생시국적취득 ②대한민국귀화(수입)인시국적취득, 이장적:] ③외국(국적)	처 ①대한민국출생시국적취득 ②대한민국귀화(수입)인시국적취득, 이장적:] ③외국(국적)
⑫혼인종류	남편	①초혼 ②사별 후 재혼 ③이혼 후 재혼	처 ①초혼 ②사별 후 재혼 ③이혼 후 재혼
⑬직전혼인 해소일자	남편	년 월 일	처 년 월 일
⑭최종 졸업학교	남편	①무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⑤대학(교)⑥대학원 이상	처 ①무학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④고등학교⑤대학(교)⑥대학원 이상
⑮직업	남편	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사무종사자④서비스종사자⑤판매종사자 ⑥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치·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노무 종사자 ⑩학생 ⑪가사 ⑫군인 ⑬무직	처 ①관리자 ②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③사무종사자④서비스종사자⑤판매종사자 ⑥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장치·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⑨단순노무 종사자 ⑩학생 ⑪가사 ⑫군인 ⑬무직

작성 방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※ ①, ②란 및 ⑤, ⑦, ⑨, ⑩, ⑪, ⑫, ⑭, ⑮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, 나머지 란(③, ④, ⑥, ⑧, ⑬)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.
- ②란: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
- ③란: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.
- ④란: 「민법」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.
- ⑤란: 혼인당사자들이 「민법」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[8촌이내의 혈족(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)]을 표시합니다.
- ⑥란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- 사실상혼인관계확인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판결법원 및 확정일자
- ⑦란: 증인은 성인이어야 합니다.
- ⑧란: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(2018. 6. 30.까지는 금치산자 포함)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.
- ⑨란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- ⑩란: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(동거)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.
- ⑬란: 이혼 또는 혼인취소가 있었던 사람의 경우 그 일자를 기재합니다.
- ⑭란: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합니다.
- ⑮란: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

- ① 관리자: 정부, 기업, 단체 또는 그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, 지휘 및 조정(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)
-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: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(과학, 의료, 교육, 종교, 법률, 금융, 예술, 스포츠 등)
- ③ 사무종사자: 관리자,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추진(경영, 보험, 감사, 상담안내통계 등)
- ④ 서비스종사자: 공공안전, 신변보호, 의료보조, 아미용, 혼례 및 장례, 운송, 여가, 조리와 관련된 업무
- ⑤ 판매종사자: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(인터넷, 상점, 공공장소 등), 상품의 광고홍보 등
-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: 작물의 재배수확, 동물의 번식사육, 산림의 경작 및 개발,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
-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: 광업, 제조업,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, 제품 가공
- ⑧ 장치·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: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,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, 운송장비의 운전 등
- ⑨ 단순노무 종사자: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
- ⑩ 가사: 전업주부 등 ⑫ 군인: 의무복무 중인 장교 및 사병 제외, 직업군인 해당 ⑬ 무직: 특정한 직업이 없음

첨부 서류

- ※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1.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.
- 2. 혼인동의서[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(2018. 6. 30.까지는 금치산자 포함)이 혼인하는 경우,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]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(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)
- 3.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 [조정,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(화해)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].
- 4. 혼인신고특별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.
- 5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
 -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: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(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)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원본 각 1부.
 -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: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1부.
- 6. 「민법」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.
- 7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 -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: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
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)
 - 우편제출의 경우: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)
 -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(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)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제출의 경우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※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(사건본인들 중 일방)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